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
제1차 운영위원회(2025.6.11.)

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

의회운영위원회

[전문위원 최 영 미]

목 차

1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

의안번호 제2025 - 73호

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. 5. 30.

나. 발 의 자: 이홍희 의원 대표발의(11명)

(이홍희, 이재운, 신중양, 신미정, 김향란, 최준규, 김홍섭, 표주숙, 신재화, 박수자, 김혜숙)

다. 회부일자: 2025. 5. 30.

2. 제안이유

○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집행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심사의 절차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, 안건 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제13조 제1항·2항에도 불구하고,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·처분 대상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안건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3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

다. 합　　의: 재무과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5. 5. 14. ~ 2025. 5. 19.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□ **조례제정의 필요성: 필요**

-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절차 개선

□ **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: 해당없음**

-「지방자치법」제71조

□ **재정부담 여부(예산조치사항): 해당없음**

□ **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: 해당없음**

□ **검토결과**

○ 이 조례 개정안은 **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 공유재산을 소관하는 상임위로 분리하여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**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
○ 「거창군의회 기본 조례」제13조제3항을 신설함.

현행	개정안
제13조 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·② (생략) <신 설>	제13조 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·처분 대상 각각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**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**하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·의결한다. 이 경우 해당 재산관리관은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」제2조제1항에 따른 각각의 재산관리관으로 보고, **본회의에서는 한 개의 안건으로 상정·의결한다**.

○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「지방재정법」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 의결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(1건)이므로 관리계획에 있는 각 재산 건별로 각각 제출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으나

○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다면 1건으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분리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 심사 내용을 합하여 전체를 한 개의 안건으로 의결하는 것은 가능하므로

○ **각 공유재산을 소관하는 상임위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**.

참고1 관련 법규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